

등록번호	교무부-1681
등록일자	2015.07.21.
결재일자	2015.07.23.
공개구분	비공개(6)

★주무관	교무지원담당	교무부장	총장
강신실	이재현	대결이재현	엄창현
협조자		산학협력단장	이상민

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 지침

교무부

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 지침

1 목적 및 개요

●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

- 제9조(중점교원의 책임과 임무)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● 본 지침에서는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

2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

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

- ① 산학협력 : 대학의 산학협력정책에 따른 산학협력 확대, 산학공동연구,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
- ② NCS기반 교육 : NCS 기반 교과목 운영, 산학협력형 교과 개편 지원, 현장실습지도 등
- ③ 취업 및 창업지원 : 취업연계, 창업교육지원 등
- ④ '특성화 사업' 수행

● 산학협력중점교수 복무

-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13조(기타)
- 경남도립남해대학 『교원의 출장·연가업무 처리지침』
- 경남도립남해대학 『강의평가 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』

3

산학협력중점교수의 세부역할

구분	역할	세부내용
산학협력	산·학·관 협력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·학·관·연 협력 유지 및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족회사 발굴 협약(연 2개 업체 이상) - 협력회사 유지 확대 • 산업체 방문 활동(연 10회 이상)
	산학공동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 요구 산·학 공동 연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지도(연 2회 이상), 공동연구 등
	기술이전 및 사업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의 R&D 성과물에 대한 기술교류 (Spin off/on), 특허 및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
NCS기반교육	NCS기반 교과목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NCS 기반 교과목의 현장실무중심 강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과목 제한(학기당 2개 이내) - 산학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
	산학협력형 교과개편 (NCS 기반 교육과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(NCS) 지원 • 산업체 요구 심화교과목 개발 지원
	현장실습지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순회지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절 및 학기제 현장 실습 (연 4회 이상)
취업 및 창업지원	취업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 취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졸업(예정)자 취업 년 5명 이상
	창업교육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체연계 창업관련 교과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실무, 산학연계형 캡스톤디자인 등
특성화사업	사업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소속팀별 업무 수행

4

정량적 성과평가와 수행 의무사항

구	분	건 수	비고
가족회사협약 추진 및 운영		연 2개 업체	
산 업 체 방 문		연 10회 이상	
N C S 교 육 과 정 운 영		학기별 2과목 이내	
취 업 지 원		연 5명 이상 취업	
추 수 지 도		연 10회 이상	
현 장 실 습 순 회 지 도		연 4회 이상	

5

산학협력실무추진회의 정례 실시

- 회의구성 : 교무부장, 산학협력단장, 종합인력개발센터장, 산학협력중점교수, 취업지원관
- 회의내용 : 산학협력·취업 성과평가 및 추진방안 토론
- 개최일정 :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

6

성과 평가 및 활용

- 산학협력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
 - 연도별 활동 계획서 : 매년 3월말
 - 연도별 활동 결과보고서 : 매년 12월말
- 평가 방법 및 절차
 -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 매년 평가
- 평가 결과 반영
 -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6조 3항에 의거 재임용에 반영